

# 비행교육원 규정

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1987. 1. 30		16	2016. 1. 12	
2	1992. 7. 1		17	2025. 8. 13	
3	1996. 7. 1		18		
4	1996. 11. 1		19		
5	1997. 2. 1		20		
6	1998. 11. 24		21		
7	1999. 9. 1		22		
8	2000. 4. 1		23		
9	2004. 9. 1		24		
10	2004. 11. 1		25		
11	2005. 11. 1		26		
12	2006. 7. 1		27		
13	2010. 4. 14		28		
14	2013. 11. 1		29		
15	2013. 12. 5		30		

## 비행교육원 규정

제1조(목적) 비행교육원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96조 및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12],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(104조 제2항)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 분야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함으로써 조종 인력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04.14., 2013.12.05., 2025.8.13.>

제2조(범위) 비행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속기관으로 과정별 학과 및 비행실기 전반의 교육을 담당한다. <개정 2013.12.05., 2025.8.13.>

제3조(위치) 비행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위치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국내·외에 산하(또는 별도) 훈련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8.13.>

제4조(조직) ① 비행교육원은 기획총괄팀, 교육품질관리팀 및 산하 비행훈련원으로 조직되며, 원장 직속으로 항공안전관리실을 둔다.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을 위한 제주비행훈련원, 정석비행훈련원, 울진비행훈련원 등 각 훈련원은 비행교육팀, 정비팀, 교육지원팀으로 구성되며, 필요 시 해외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조직을 운영한다.

<개정 2010.04.14., 2013.11.01., 2016.01.12., 2025.8.13.>

② 교관은 학과 교관과 비행실기 교관으로 나뉘며 해당 교관은 관련 자격요건과 임명 절차를 따른다.<개정 2025.8.13.>

③ 해외위탁프로그램 운영 감독을 위하여 필요 시 파견감독관을 둘 수 있다.

④ 비행교육원의 조직표는 <별표 1>과 같다.<개정 2025.8.13.>

제5조(원장 및 부원장) ① 원장 및 부원장은 비행 교육 또는 조종사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보하되 원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 또한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② 원장은 비행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 <개정 2013.11.01., 2016.01.12., 2025.8.13.>

③ 정석비행훈련원과 울진비행훈련원은 부원장을 두며, 각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담당 비행훈련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 단, 정석비행훈련원 부원장은 제주비행훈련원 업무에 대한 관리를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4.14., 2025.8.13.>

제6조(교관의 자격 및 교육) ① 비행교육원 교관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제1조의 관련규정과 부칙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② 최초로 임용되는 교관은 임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단, 최초 임용자에 대한 정기보수교육은 임용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<개정

2025.8.13.>

- ③ 기타 세부적인 교관의 자격요건과 임용 교육 및 보수교육 등 세부적인 교관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 및 교육규정의 내용에 따른다. <개정 2025.8.13.>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비행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5.8.13.>

- ②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협력처장, 사무처장, 항공운항학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기획총괄팀장으로 한다.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1., 2016.1.12., 2025.8.13.>
-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명 기간은 해당 위원의 보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.11.1., 2025.8.13.>

제8조(운영위원회 임무)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. <개정 2025.8.13.>

1. 비행교육원 운영상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8.13.>
2.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8.13.>
3. 재무 운영에 관한 중요 변동 사항 <개정 2025.8.13.>
4.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<개정 2025.8.13.>

제9조(기타 위원회) ① 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평가위원회, 품질관리위원회, 안전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8.13.>

- ② 교육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훈련원별 교육 규정에 따르며 각 비행훈련원은 필요시 별도의 세칙을 마련한다. <개정 2025.8.13.>
- ③ 교육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·개정은 각 비행훈련원의 필요에 따라 검토하고 원장의 인가하에 반영한다. <개정 2025.8.13.>

제10조(교육과정) ① 비행교육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전문교육기관(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)으로서 다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각호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4.14., 2025.8.13.>

과정명			관련규정	인가사항
과정명	제주	울진		
자가용조종사 과정	○	○	- 항공안전법 제48조의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2항의 규정 -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	학과 및 비행 실기
사업용조종사 과정		○		
계기비행증명 과정	○	○		
조종사등급한정 추가과정		○		
조종교육증명 과정	○	○		
무인기조종사 양성 과정 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동력 비행장치 교육과정)			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	

② 상기 교육과정 외에 기초학과프로그램, 해외위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상기 ①항의 교육과정 외에도 전문교육기관의 특별과정 및 기타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면장전환과정, 비행경력축적과정, 기량유지과정 등을 운영한다. <신설 2025.8.13.>

④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항공훈련기관(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)으로서 다음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1. 조종사지상학과정
2. 항공영어교육과정
3. 대한항공 신입조종사 비행교육과정 <신설 2025.8.13.>

제11조(선발 및 입과) ①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별로 선발하며, 입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25.8.13.>

② 총장의 입과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과정별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③ 과정별 교육 기간이 지연 또는 연장되는 경우, 늘어난 기일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비행교육원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④ 과정별 교육훈련비는 총장의 재가 하에 비행교육원이 정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⑤ <삭제 2025.8.13.>

⑥ 항공운항학과의 비행실기 과정은 군조종사과정(MPC, Military Pilot Course)과 민간조종사과정(CPC, Civil Pilot Course)으로 나뉘며, 입과 자격은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에 한한다. <신설 2025.8.13.>

제12조(교육운영) ① 교육 운영은 과정별로 편성하되, 그 내용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단,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의 교육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② 과정별 교육 대상 및 세부 내용은 각 비행훈련원이 정한다. <개정 2025.8.13.>

제13조(평가) ① 평가는 학과 평가와 비행실기 평가로 구분하며, 각 과정의 단계별로 실시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② 필요 시 과정별로 조종사로서의 자세와 생활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5.8.13.>

③ 평가기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행훈련원별로 정한다. <개정 2025.8.13.>

제14조(수료) 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수료를 인정한다. <개정 2025.8.13.>

제15조(훈련생 의무 및 징계) ① 비행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입과한 전 훈련생은 본 대학교 학칙 또는 비행교육원과 각 훈련원의 제 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8.13.>

② 훈련생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 및 징계사항은 각 비행훈련원이 정한다. <개정 2025.8.13.>

제16조(사업) 비행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의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
2.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전문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
3. 기타 비행 관련 교육 및 전문 분야 <본조 개정 2025.8.13.>

제17조(재정) 비행교육원의 재정은 입과한 훈련생이 납부한 교육훈련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<개정 2025.8.13.>

제18조(회계) 비행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한국항공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, 회계 관리는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에서 한다. <개정 2025.8.13.>

## 부 칙

1. 이 규정 이외의 비행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0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2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3.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② (규정의 폐기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비행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은 폐기한다.
- 14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5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16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7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18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19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 조직 및 편제 <개정 2010.04.14., 2016.01.12., 2025.8.13.>

